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 제44호	
-----------	--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	출	자	서승필	의원	외	4명
제를	들연율	걸일	2023	. 4.	11	•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제44호

발의연월일: 2023. 4. 11.

대표발의자 : 서승필

공동발의자 : 이태모, 조배식,

장진호, 윤금숙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 개정 (제25조 제8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28조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7조

나. 기타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○ 입법예고: 2023. 4. 11. ~ 4. 15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제8항 중 "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각 호의 휴가일수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"를 "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단,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 사용하되,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	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승필 의원 외 4명	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특별휴가)	제25조(특별휴가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	8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	
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	
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	
직기간 산정은 <u>제19조제2항에서</u>	제19조제2항에서
정한 바에 따르며, 각 호의 휴가일	정한 바에 따른다. 단, 재직기간별
수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	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
할 수 있으나 그 재직기간을 지나	사용하되,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
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	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
	<u>사용할 수 있다.</u>
1.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	1
2.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	2
3. 30년 이상 : 30일	3
⑨ ~ ⑫ (생 략)	⑨ ~ ⑫ (현행과 같음)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-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.
 - ② 제1항에서 "재직기간" 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, 연월일수(年月日數)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 - 1.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
 - 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 - 3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(이하 "공무상 부상등"이라 한다)으로 인한 휴직

- ③ 해당 연도에 결근·정직·강등·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.
- 1. 병가(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)를 받지 않은 공무원 2.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
-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· 저축한다.